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18. 07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지방별정직공무원 비서실장 임용을 통해 군정활동 수행, 정보 수집 및 정리, 각종 현안사항 및 민원사항 처리 등 복잡·다양한 정책 정보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한 군수의 정책 결정기능을 보좌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
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: 665명 → 666명 (증 1명)
 - 집행기관의 총수 : 653명 → 654명 (증 1명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 (변동없음)

나.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

- 총 계 : 665명 → 666명 (증 1명)
- 정 무 직 계 : 1명 (변동없음)
- 일 반 직 계 : 642명 (변동없음)
 - 4급·4~5급 : 4명 (변동없음)

- 5급 : 27명 (변동없음)
- 6급 이하 : 610명 (변동없음)
- 전문경력관 : 1명 (변동없음)
- 연구 직 계 : 3명 (변동없음)
- 지 도 직 계 : 19명 (변동없음)
- 별 정 직 계 : 0명 → 1명 (증 1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불임(관계법령 발취)

나. 예산조치 : 불임(비용추계서)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 : 생략(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)
- 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3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4) 규제심사 : 비규제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65명”을 “666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653명”을 “654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 ~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평창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
비 율	1%이내	5%이내	24%이내	30%이내	27%이내	12%이상	1%이내

비 고 : 1. 일반직과 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2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-	100%	6% 이내	94% 이상

비 고 :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3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상당 이상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	100%			

비 고 : 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666	666				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642	642				
4급	2	1		1		
4~5급	2	2				
5급	27	12	2	4	1	8
6급 이하	610	610				
전문경력관 소계	1	1				
연구직 계	3	3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3	3				
지도직 계	19	19				
지도관	1			1		
지도사	18	18				
별정직 계	1	1				
6급상당	1	1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평창군에 두 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 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는 <u>665명</u> 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653명</u>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666명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654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~3. (생략)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(생략)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~⑤ (생략)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비용발생 요인 : 공무원 정원 1명 증가(655명 → 666명)
- 나. 관련조문 :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(정원의 총수)

2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
 - 공무원 정원 1명이 증원되고, 공무원 보수는 매년 전년대비 3% 상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
 - 2019년 비용추계 판단기준은 2018년 기준인건비 중 일반직 1인당 평균 인건비(72,271천원)에 3% 인상을 적용
- 나. 추계 결과 : 2018~2022년까지 총 383,695천원 지출 예상
 - 2018년 : 72,271천원 × 1명 = 72,271천원
 - 2019년 : 72,271천원 × 103% = 74,439천원
 - 2020년 : 74,439천원 × 103% = 76,672천원
 - 2021년 : 76,672천원 × 103% = 78,972천원
 - 2022년 : 78,972천원 × 103% = 81,341천원
- 다. 채용조달 방안 : 자체채원 및 지방교부세 채원

3. 관련 의견

- 가.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정성문
연락처	(033) 330 - 2210